

## 1. 개정이유

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,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(제15조제1항제3호)

-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, 인증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

### 나.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 (제18조)

-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

### 다.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(별표 1 제11호 라목)

-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도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

## 3. 참고사항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rra.go.kr>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고시·공고 →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●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-3호

「전파법」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3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중 일부 개정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**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**”를 “**적합성평가**”로 한다.

제1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업용 기자재(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,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)

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

가.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,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

나.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, 제품명, 모델명, 제조번호, 제조·수입현황, 판매·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

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

[별표 1] 제11호의 너목 1)의 대상기자재란 중 “라목”을 “라목 1)에서 3)”으로 하고, 제11호의 라목 4)의 대상기자재란 중 “4) 기타 조명기구(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, 충전식휴대전등, 조광기)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) 기타 조명기구(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, 충전식휴대전등, 조광기)

※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

부 칙 <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-3호, 2023. 2. 3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5조(변경사항의 범위 등) ①</b>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</u>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b>제18조(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)</b>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<b>제15조(변경사항의 범위 등) ①</b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적합성평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8조(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5. 산업용 기자재(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,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)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

가.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,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
나.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, 제품명, 모델명, 제조번호, 제조·수입 현황, 판매·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

[별표1]

**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**

(제3조 관련)

1. ~ 10. (생 략)

11.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

대상기자재	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		적합성평가 유형			기기 부호
	전자파 적합성	생략	적합 인증	지정 시험 기관	자기 시험	
가. ~ 다. (생 략)						
라. 조명기기류	1)~ 3) (생 략)					
: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가구 또는 장치	4) 기타 조명기구 (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, 충전식 휴대전등, 조광기)	○			○	LIT21
마. ~ 거. (생 략)						
너.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	1) 다목, 라목, 자목 1)에서 32) 및 37)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 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	○			○	REC
	2) ~ 4) (생 략)					
더. (생 략)						
※ 비 고						
1.~ 9. (생 략)						

[별표1]

**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**

(제3조 관련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(현행과 같음)

대상기자재	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		적합성평가 유형			기기 부호
	전자파 적합성	생략	적합 인증	지정 시험 기관	자기 시험	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				
라. 조명기기류	1)~ 3) (현행과 같음)					
: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가구 또는 장치	4) 기타 조명기구 (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, 충전식 휴대전등, 조광기) ※ 직류 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	○			○	LIT21
마. ~ 거. (현행과 같음)						
너.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	1) 다목, 라목 1)에서 3), 자목 1)에서 32) 및 37)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 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	○			○	REC
	2) ~ 4) (현행과 같음)					
더. (현행과 같음)						
※ 비 고						
1.~ 9. (현행과 같음)						